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9,027,716	27,870,831
일반회계	795,342,568	23,860,277
특별회계	133,685,148	4,010,554
공기업특별회계	96,076,749	2,882,302
공영개발특별회계	24,786,903	743,60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179,953	785,3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109,893	1,353,297
기타특별회계	37,608,399	1,128,252
의료급여특별회계	626,203	18,78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056	3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16,687	42,501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6,943,062	208,292
균형발전특별회계	1,600,000	48,00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708,980	21,26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355,028	100,6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17,444	15,523
수질개선특별회계	22,429,938	672,8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96,85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중앙기금(기), 도비보조금(도), 군비(군), 특별교부세(특), 시·군특별조정교부금(조), 군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군비 부담분(추)